#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김현정 • 모경종 • 민병덕

민형배 • 박상혁 • 이광희

이상식 · 정성호 · 정준호

한정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2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	제26조(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
투자) ① 제12조제1항제4호의2	투자) ①
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	
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	
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	
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	
재의 <u>대차대조표</u> 상의 자산총액	<u>재무상태표</u>
을 말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